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18조, 제23조, 제24조,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본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- 다 음 -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: 보건복지부, 전국 보건소(시·도사업과 포함)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국민건강보험공단
- 개인정보화일(DB)수집의 목적
 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
 -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, 지원현황 조사 또는 확인시 활용
 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통계자료 수집, 분석,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
 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
- 개인정보수집항목
 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부모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전자메일주소, 건강보험가입현황, 건강보험료, 난임시술여부 등
 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: 치료와 관련된 사항 및 의료비용(의료기관명, 치료방법, 진단명, 치료와 관련한 사항 등), 출생아의 성장 관련 현황 등
 - 의료비지원 대상 영아 및 부부를 제외한 가족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건강보험가입현황, 건강보험료
-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
 - 보건복지부·전국 보건소(시·도사업과 포함)에서 대상자 선정·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활용시 : 영구
- 개인정보 조회·열람·활용(행정정보 공동이용) 동의내용
 - 주민등록등(초)본 조회·열람(세대원 수, 출생여부 확인)
 -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및 가족수 확인)
 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건강보험료 및 납부여부 확인)
 - 건강보험카드(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)
 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, 치료현황, 지원내용 확인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
 - 의료비지원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
 -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'행정정보공동이용' 조회 동의
-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
 -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.

성 명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	고유식별정보 처리	민감정보 처리	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“의료비 지원신청”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동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관계	동의확인(서명)
			(인)
			(인)
			(인)
			(인)

※ 관계표시 방법 : 본인(의료비 지원신청자), 배우자, (시)부모, 조부모, 기타

※ 대상 :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사람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신청서(지급보증 요양기관용)						
지원대상자	임 산 부 (영유아)성 명		생년월일			
	출생시 체중	g (반드시 gm단위로 작성)	선천성이상질환명 (질병분류코드)			
	주 소					
	전화번호		핸드폰번호			
신청 요양기관	기 관 명		전화번호			
	주 소					
입 원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(일간)					
진료비(원)	총 진료비 (A + B + C)	환 자 부 담 금 소 계 (A + C)	급여부분 진료비			비급여부분 진료비 (D)
			본인부담금 (A)	공단부담금 (B)	전 액 본 인 부 담 금 (C)	
입금은행 및 계좌번호					예 금 주	
의료급여 수급권자	<input type="checkbox"/> 1종/ <input type="checkbox"/> 2종/ 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종/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종					
<p>위와 같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의료비지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 요양기관의 장 (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>시·군·구청장(보건소장) 귀하</p>						

※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, 의무 작성양식은 아닙니다.

● 지원신청

- 신청방법 : 대상 영아의 부모가 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
- *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
- ** 퇴원전 의료비 신청(중간정산)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

- 제출서류

구분	구비 서류
공통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 신청서 1부 ■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,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■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■ 주민등록등본 1부* ■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해당자 제출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미숙아)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■ (선천성이상아) 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각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·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·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■ (휴직자) 휴직증명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■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급여명세서,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명원, 위촉증명서, 계약서(사본), 계약이행확인서 등) 1부

● 지원신청

- 신청방법 : 대상 영아의 부모가 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
- *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
- ** 퇴원전 의료비 신청(중간정산)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

- 제출서류

구분	구비 서류
공통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 신청서 1부 ■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,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■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■ 주민등록등본 1부* ■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해당자 제출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미숙아)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■ (선천성이상아) 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각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·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·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■ (휴직자) 휴직증명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■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급여명세서,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명원, 위촉증명서, 계약서(사본), 계약이행확인서 등) 1부

● 지원신청

- 신청방법 : 대상 영아의 부모가 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
- *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
- ** 퇴원전 의료비 신청(중간정산)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

- 제출서류

구분	구비 서류
공통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 신청서 1부 ■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,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■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■ 주민등록등본 1부* ■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해당자 제출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미숙아)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■ (선천성이상아) 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각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·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·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■ (휴직자) 휴직증명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■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급여명세서,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명원, 위촉증명서, 계약서(사본), 계약이행확인서 등) 1부

● 지원신청

- 신청방법 : 대상 영아의 부모가 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
- *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
- ** 퇴원전 의료비 신청(중간정산)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

- 제출서류

구분	구비 서류
공통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 신청서 1부 ■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,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■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■ 주민등록등본 1부* ■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해당자 제출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미숙아)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■ (선천성이상아) 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각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·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·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■ (휴직자) 휴직증명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■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급여명세서,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명원, 위촉증명서, 계약서(사본), 계약이행확인서 등) 1부